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법률 제명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안 제명).
- “대형가속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대형가속기 지원사업” 및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을 정의함(안 제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임대료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무상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
- 국가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II. 검토의견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결과 반영 필요

- 제정안 제8조¹⁾에 따른 국가 소유 토지·시설의 사용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제12조²⁾에 따른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

1) 제8조(임대료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제1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의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³⁾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에 해당함.

- 그런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⁴⁾는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면서, 별표의 내용은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하여 국유재산특례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이 필요하며, 제정안은 현재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4호)⁵⁾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참고사항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동 법

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4)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별 표
<신 설>	223.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Ⅲ. 관계 기관 의견

- 기획재정부는 제정안 제10조6)에서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개별법 차원의 세제 지원 근거규정은 비과세·감면을 통합 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개별법에 재량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는 세제지원이 불가하며, 국민의 불필요한 기대와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의 건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그 관리·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 제2조제4호7)의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의 범위에는 ‘그 밖

6) 제10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란 대형가속기를 구축·운영 또는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포함되는데,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시설의 사용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등 특례 적용 범위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으로 하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까지 적용할 경우 공유재산의 실질적 사유화 우려, 지방자치단체 재산권 침해, 타 기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제외하고 공유재산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는 세제지원이 불가하여 규정 실익이 없어 세지지원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 의견과 임대료 등 지원 대상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감면 대상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에 각각 동의하여 합의안을 마련함.

제 정 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합의안
제8조(임대료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4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기관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가.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나.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제 정 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합의안
제10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삭 제> 제1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제2조제4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기관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제2조제4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기관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제2조제4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문위원 유 인 규)